

# 수도계량기점검및교체업무운영규정

제정 2016.11. 4 규정 제832호

개정 2017. 4.26 규정 제90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대행 받은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운영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 점검업무”라 함은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정수처분예고서 송달, 안내문 송달, 기타 계량기 검침 및 송달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소형계량기 교체업무”라 함은 구경 50mm이하의 수도계량기의 만기, 동파, 디지털계량기 교체와 폐전 계량기 철거업무를 말한다.
3. “대형계량기 교체업무”라 함은 구경 50mm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의 만기, 동파, 고장 교체 또는 신설 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근무제도)** 수도계량기 관리 및 교체 업무 운영부서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휴무제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 조정)** 처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검침, 교체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무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기록에 남겨야 하며, 직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처리)** ① 담당직원은 계량기 점검 및 교체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현장 작업 중 누수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한다.  
③ 담당직원은 이륜자동차 또는 차량 운행 중 사고발생시 즉시 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한다.

**제8조(시민서비스 향상)** ① 담당직원은 점검 및 교체시 생활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발견할 경우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번호 등) 및 사유 기재 후 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옥내검침 수용가가 사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 시 검침기간 내(정기 검침일 전·후 2일)에 예약일을 정하여 방문 검침 실시한다.

③ 담당직원은 계량기가 옥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영업지장 등으로 수용가측에서 교체일을 변경 요청할 때에는 방문 예약일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2장 수도계량기 점검

**제9조(관리범위)** ① 수도계량기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 관할하는 수도계량기 점검
2. 고지서 송달, 정수처분예고서 송달, 안내문(동파예방, 요금관련) 송달
3. 검침관련 단순 민원 처리, 시민서비스(생활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보고), 예약 방문  
② 공단은 제1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점검업무)** ① 수도계량기 점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 지침 점검(시계외 일괄급수 수전 제외)
  2. 계량기 기물번호 및 봉인 이상 유무 확인
  3. 계량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
  4. 급수사용 상황조사(전월대비 격감·격증 원인 조사 및 수용가 안내 등)
  5. 급수업종(하수업종 포함)적용의 타당성여부 확인
  6.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사용세대수 변경여부 확인
  7. 사용자 등의 연락처, 상호, 주소(새주소) 일치여부 확인
  8. 급수 중지, 정수처분수전 이상 유무 확인
  9. 수도조례 위반사항 확인
  10. 점검구역 내 점검부가 없는 건물(누락수전) 확인
  11. 동절기 검침중지 수전은 검침기간에 동파 예방 보온조치 여부 확인 및 보온 미조치 수전에 대해서는 보온조치 안내
  12. 맨홀식 계량기함 보온재 파손여부 확인
  13. 기타 계량기 보온재, 보호통 원위치, 옥내누수 등 확인
- ② 점검은 격월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 및 관리전환 공동주택의 주계량기, 군부대, 공업용수 및 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한 수용가 점검은 매월 검침한다.
- ③ 점검일자는 대행 협약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사무 세부 내용을 준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시 안전관리)** 계량기 점검시 계량기실 깊이가 1.5M 이상인 계량기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2인1조로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침전에 계량기 실 뚜껑을 열고 내부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산소농도를 측정한다.
2. 산소농도가 적정 범위(18~23%)를 벗어나는 경우 검침을 중단하고, 관리소에서 송풍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원받아 적정한 안전조치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맨홀뚜껑 개폐시 안전조치, 지하맨홀 출입 시 사다리 안전성을 확인한다.
4. 산소농도가 적정 범위(18~23%)를 벗어나는 계량기실 및 지하 출입 기구가 노후된 시설은 검침근무보고 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보고하며, 계량기실 진입 전 사진촬영(PDA, 휴대폰)으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계량기실 진입을 금지한다.

- 제12조(고지서 등 송달)** ① 담당직원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자동납부청구서는 대행 협약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사무 세부 내용을 준수하여 각 수용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의 수도를 정수처분 할 것임을 사전 예고하는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해당 수용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때 PDA에 송달일과 시간 입력 및 수령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직원은 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사항을 송달 요구 기간 내 수용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3장 수도계량기 교체

- 제13조(관리범위)** ① 공단이 관리하는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소형 수도계량기 교체  
2.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관할하는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수행업무)** ① 소형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 업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 유효기간(8년) 도래 수도계량기 교체
  2. 동파 계량기 교체
  3. 폐전계량기 철거
  4. 디지털계량기 교체
  5. 역류방지밸브 설치
  6. 동절기 동파 민원 대비 상황근무
  7. 계량기 동파예방에 관한 업무(보온상태 점검 및 홍보, 보온재교체 등)
  8. 계량기 교체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 등(계량기 수불 및 정리, 폐 계량기 반납 등)
- ②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 업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 유효기간(6년) 도래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2. 기계식 수도계량기 신설
  3. 고품질(전자기식, 초음파식) 계량기 신설 및 교체
  4. 고품질(전자기식, 초음파식) 계량기 겸침용외함(STS) 설치
  5. 폐전 계량기 철거
  6. 노후 스트레이너 및 부속자재 교체, 유량제어장치 설치
  7. 계량기 교체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 등(계량기 수불, 정리 등)

- 제15조(교체 작업시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교체작업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주변의 교통여건·위험시설물·건축물·계량기실 내 유해가스 등에 대한안전 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측정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의 산소가 존재 하는지 확인하고, 송풍기 등으로 충분히 환기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대형수도계량기 교체 현장 작업은 3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고, 작업장 외부에 1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단, 구경 80mm는 2인 1조로 편성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 요원 1명은 필히 배

치하여야 한다.

4. 급수설비 이외 다른 시설물이나 장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 건물의 관리원 입회하에 교체업무를 수행한다.
5. 침수된 계량기실은 배수 작업을 실시 후 작업하며, 심도가 깊은 계량기실에는 로프 등 안전장구를 장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급수설비 등 시설물의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현장의 배관상태 및 밸브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교체작업으로 인한 누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체작업의 유보)** ① 담당직원은 교체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체작업을 유보한다.

1. 현장 계량기와 작업지시 내역(기물번호, 구경, 지침수 등)이 다를 때
  2. 관 노후, 장애물 적치, 장기공가 등 교체 장애 수전
  3. 조작 의심, 봉인 탈락 등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계량기
  4. 재개발 등으로 당해년도 철거가 예정된 계량기
  5. 소출수가 예상되는 급수설비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 ② 담당직원은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 중 교체장애 사유가 수도사용자의 귀책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도 사용자에게 해소하도록 현장에서 1차 안내하고,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